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홍덕기**

〈차례〉

- | | |
|----------------|-------------------------|
| I. 서 론 | III.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 |
| II. 스포츠 인권의 개념 | IV.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과 향후 과제 |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 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팀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본다.

주제어 : 스포츠 인권, 스포츠 정책, 학습권, 성폭력, 폭력,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I. 서 론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는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들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여자

* 본 논문은 2020년 제66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deockkikhong@gnu.ac.kr.

(투고일자 : 2021.01.13., 심사일자 : 2021.01.25., 게재확정일자 : 2021.02.18.)

프로배구 선수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어 폭력에 대한 미투가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¹⁾ 사실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만 하더라도 2000년 장희진 선수사건,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습소 화재 사건, 2006년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선수 성폭력 사건,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 분야 성폭력 실태 보도 등 2000년대 초·중반부터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해 왔다.²⁾

특히, 2019년 초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알려졌으며, 2020년 6월 철인 3종 경기의 한 실업팀 선수는 선배와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속에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줘!”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렇듯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연이은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가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학문적으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시행을 촉발했다. 특히, 최근 스포츠 미투 운동 및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출범하였으며, 방대한 분량의 스포츠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도 인권향상 대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며 스포츠 인권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포츠 인권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며,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스포츠 인권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스포츠 인권개념이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스포츠 인권의 개념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2장). 둘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스포츠 인권의 시대적 흐름을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스포츠 정책의 개입 측면에서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스포츠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3장). 셋째,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 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차원에서 검토한다(4장).

1) 데일리안(2021.2.22). “내가 다 터트릴꼬얌. 이다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학폭 미투 확산”.

2) 안민석/홍덕기, 「스포츠인권백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포츠 반(反)인권 사례 모음.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2019.

II. 스포츠 인권의 개념

1.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스포츠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와 ‘인권’이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스포츠 인권’의 정체성과 그 하위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⁴⁾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가 된 사건들을 학문적으로 주목하면서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온 특수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장희진 수영선수가 태릉선수촌 합숙 훈련 중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제명당하는 사건을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사건’으로 쟁점화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이슈가 여론의 관심을 넘어 ‘학문적’ 주제로 들어왔다.⁵⁾ 같은 맥락에서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9명의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자 합숙소의 폐쇄적 구조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체육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즉, 여론의 관심이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 자극적인 주제에 집중되고 이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는 일련의 경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상황을 가져왔다.⁶⁾

그동안 스포츠 인권개념을 구성하는데 핵심이 되어온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권의 사전적 의미는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⁷⁾ 스포츠 분야에서의 학습권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누릴 권리,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된다.⁸⁾ 학생선수가 스포츠 재능을 실현하면서도 균형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 이대택, 「스포츠인권정책의 현재」,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25면.

4) 흥덕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리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한국체육학회, 2020, 제59권 제2호, 286면.

5) 흥덕기/류태호,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07, 제14권 제4호, 132-133면.

6)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8.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학습권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31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학습권 보장 담론은 학생선수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가치, 재사회화, 기본권을 중시하는 관점을 취한다.⁹⁾ 모든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될 때 그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은 학업과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학습권은 단지 정규 수업을 잘 이수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같은 좁은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스포츠 인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것도 교육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학습권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해석은 학습권 보장 담론과 운동권 보장 담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학습권 담론의 근거를 수용하면서도 그 실천행위로서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한다.¹⁰⁾

스포츠 인권 논의는 2000년 장희진 선수 사건을 기점으로 여론이 형성된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200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는 체육특기자제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순회(전임)코치 제도, 합숙소 운영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교체육의 비정상성을 ‘특혜적 선발’, ‘훈련중심의 육성’, ‘기능발달 중심의 평가’, ‘실적 중심의 포상제도’, ‘참가 자격의 제한’, ‘합숙 훈련의 비인격성’ 등으로 보고했다.¹¹⁾ 당시 연구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운동부가 학교 정과 교육 속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기적성교육을 넘어서 우수선수를 육성해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자원을 길러내는 엘리트 체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2003년 합숙소 화재 사건 당시 정윤수(2003)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이 사건이 스포츠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¹²⁾

천안초교 참사를 돌아볼 때 과연 성장기의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린 선수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어른들이 기필코 그들에게 보장해야 할 민주적 권리는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이번 참사로 보건대, 적어도 그 아이들은 민주적 권리를 저당 잡힌 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시간에도 많은 경우 아이들은 민주주의 보편적 원칙의 바깥에서 힘겹게 자라는 것이다.

8)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명왕성,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체육학회, 2020, 제59권, 제5호, 234면.

10) 명왕성, 앞의 논문, 235-236면.

11) 류태호,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27-69면.

12) 정윤수,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운동선수의 인권”,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체육시민연대/한국스포츠교육학회/전국체육교사모임, 2003, 21면.

이후 학생선수의 학습권 관련 연구는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 등과 맞물려 다양하게 수행되었다.¹³⁾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국회,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발표된 학습권 보호 정책을 분석한 김현수, 박성주(2020)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첫째, 관리 체계 구축(최저학력제, 수업결손 금지 제도화, 주중 대회 참가 금지, 휴식 보장, 보충수업 내 실화, 지도자 질적 제고,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둘째, 인식개선(학습권 보호 기준, 훈련 시간 기준, 행동규범,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이다. 관리체계 구축과 인식개선 정책들은 아쉽게도 현장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내용으로 반복되어왔다.¹⁴⁾ 국가는 1970년대부터 체육특기자제도, 태릉선수촌 건립,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 및 병역 혜택 등을 바탕으로 소수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을 수십 년에 걸쳐 견고하게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밝히고 있는 의무교육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생선수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기본권을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입장은 기존 패러다임과 충돌한다. 즉, 국가의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둘째, 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른다.”이다.¹⁵⁾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에 의거해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근거가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정의는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 공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타, 상해 등 신체적 폭력과 모욕, 협박, 따돌림, 강요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 모두를 의미한다.”이다. 이에 따르면, 스포츠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포함한다.¹⁶⁾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스포츠 폭력의 대상은 지도자와 선수, 동료나 선후배 선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뿐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기관 책임자,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한다. 스포츠 폭력의 범위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정의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 지도자와 선수 간 사전에 합의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행해지는 훈련, 자유 시간제한, 일방적 귀가 시간 늦추기, 집단생활에 불이익 주기, 훈련으로 위장한 체벌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기량이나 노력 부족, 훈련 태도와 성적 불량,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등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공포, 우울, 소외감과 같은 정서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3) 임수원/박현권, “고등학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 코칭능력개발, 2019, 제21권 제4호, 3-14면.

14) 김현수/박성주,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2020, 제59권 제5호, 17면.

15) 국립국어원, 앞의 책, 2020.

1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2020.

스포츠 폭력은 그동안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은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의 연장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정도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이는 ‘섬 문화’로 대변되는 스포츠 분야의 폐쇄성 속에서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력이 발생하는 ‘일상화된 폭력’과 ‘폭력의 내면화’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대물림되는 재생산 기제로 이용되었다.¹⁷⁾

셋째, 성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다.¹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을 사전적 정의보다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며 “강간이나 성추행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희롱, 불쾌한 성적 농담 등 상대의 의사를 거슬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성폭력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가해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몸이나 성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스포츠 내 성폭력의 경우 스포츠팀에 소속된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성애화된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의도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권력과 신뢰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행위로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된 행동이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동료나 선후배, 지도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훈련장, 합숙소, 이동 차량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²⁰⁾

스포츠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부정하거나 훈련, 교육, 치료의 일환 등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오랜 유대관계, 내부 결속력, 가족적 특성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성적 길들이기(그루밍) 방식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포츠 성폭력의 예로는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몸의 특정 부위를 뻔히 보는 행위, 성적 내용을 포함한 불쾌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스포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자존감 하락, 수치심, 불안, 죄책감, 감정의 기복, 우울증, 소외,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발작, 식이장애, 자해 등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 훈련 및 지도나 시합 과정에서 갖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도자와 선수 간 강한 위계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17) 류태호/이주우,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 2004, 제43권 제4호. 279면.

18) 국립국어원, 앞의 책, 2020.

1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2020.

2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2020.

2.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

그동안 논의된 스포츠 인권의 범주는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다.²¹⁾ 또한, 기존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오랜 기간 좁게 해석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범위와 대상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역시도 그 명칭에서만 ‘인권’을 말할 뿐 내용은 폭력 및 성폭력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²²⁾ 한편, 최근 여러 시·도에서 제정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 조례의 내용 등에서도 스포츠 인권 보호의 대상을 운동선수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과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의 범주에 대해 기존의 좁은 개념과 해석을 넘어 확장적 논의가 요청된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볼 때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시대가 바뀌면서 자유권, 평등권을 넘어서 연대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스포츠 경기에는 필연적으로 승리와 패배가 뒤따른다. 승리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 경쟁은 스포츠의 본질적 측면이자 숭고한 정신이지만, 승리 지상주의라는 명분으로 규칙이 무시되면 이는 스포츠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승리 지상주의 문화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정당화’ 논리를 낳는다. 승리 지상주의와 폭력 문화에 길들여지면 ‘인권감수성’이 무뎌진다.

‘인권’의 관점으로 학생선수를 바라보면, 학생선수는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자 ‘인간’이다. 자아정체성 및 인격 형성에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생선수에게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 ‘신체적, 성적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²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에 비추어봤을 때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때 신체의 자유, 학습권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는 학생선수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스포츠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김현수(2018)는 ‘스포츠는 인권인가?’란 질문을 통해 스포츠 활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21) 박영옥,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 폐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폐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15-17면.

22) 김현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2020, 제28권 제3호, 69면.

23) 남상우, 「스포츠인권침해, 왜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가」, 스포츠인권, 폐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폐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24) 흥덕기/류태호, 앞의 논문, 2007, 141-144면.

위해 필수적인 문화 요소이므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스포츠가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⁵⁾ 건강권과 사회권을 확립하기 위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중요하며 이는 자유권, 평등권 등과 함께 인권의 범주로서 ‘스포츠를 할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이 명확해지려면, 1) 개인의 자기 결정권 문제의 해결, 2) 경쟁의 해체를 통한 스포츠의 재구조화, 3) 차별의 해체를 통한 저변의 확대, 4) 학습권으로서의 스포츠, 5) 연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⁶⁾.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를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이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생활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자유권 침해, 안전할 권리 미흡, 승부조작, 입시부정, 사전스카우트 문제, 경기단체 사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실, 사생활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자유권 침해, 안전권 등은 헌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만큼은 제대로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²⁷⁾ 따라서 기존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왜 스포츠 분야에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분야는 한국사회의 다른 분야와 달리 오랜 기간 ‘승리 지상주의’, ‘폐쇄성’, ‘수직적 위계관계’를 일상적으로 내면화시켜왔다는 점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의 양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사회적 강자와 약자는 권력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학교운동부 구조 속에서 ‘나이가 많거나’, ‘운동 실력이 좋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놓이면 권력의 상위에 위치한다. 강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 단지,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자신보다 운동 실력이 낮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기실적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나친 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혐오와 차별에 기반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은 여성, 장애인,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 등 스포츠에서 소외되어온 다양한 소수자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III.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

앞서 스포츠 분야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학문적 논의, 스포츠 인권개념의 형성 등으로 인해 스포츠인권은 마침내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 의제로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사회 문제가 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 스포츠 정책의 개입 측면에서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

25)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2018, 제26권 제1호, 31-32면.

26) 김현수, 앞의 논문, 2018, 31-32면.

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7.15).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정책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작업에서 시기 구분의 기준에 대한 합의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시기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²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정책 수립의 주체는 결국 정부라는 점에 주목해서 국가의 스포츠 인권정책 수립을 통한 스포츠 인권정책 개입의 적극성 여부를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첫째,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조사한 시기가 2006년이었으며 2010년까지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이 쏟아져나왔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1차 정책수립기(2006-2010)'로 정했다. 둘째, '정책과도기(2011-2018)'의 경우 이 시기에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스포츠 인권정책에 대한 개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책과도기로 설정했다. 셋째,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경우 스포츠 인권침해와 관련한 급격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스포츠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정책과도기(2011-2018)'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기간이 긴 이유는 '1차 정책수립기(2006-2010)'에 벌어진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파급력과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에 스포츠 미투로 촉발된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비교해 정책과도기 시기에는 급격한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과 대중의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작용했다. 또한, '정유라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이 스포츠 분야의 비리에서 출발했지만, 당시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차관이 비리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인권정책이 이렇다 할 우선순위로 부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스포츠 인권 논의의 출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영옥(2020)은 한국의 스포츠 인권정책을 '맹아기'와 '정립기'로 구분하였다²⁹⁾. '맹아기'의 시기적 구분의 근거로는 2004년 국회에서의 최저학력제 입법화 노력,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2005년 교육부 상시합숙 금지, 2009년 문체부, 대한체육회, 교육부 합동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등의 정책권고 등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목표를 수립한 시기를 그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 관련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을 '1차 정책 수립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전에도 학습권 보호 문제나 2004년 쇼트트랙 선수 폭력사건 등 스포츠 인권침해 사안이 문제가 되고 교육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28) 박영옥, 앞의 논문, 2020, 15-17면.

29) 박영옥, 앞의 논문, 2020, 11-16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기초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선수가 어린 나이부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운동부 문화에 입문하면서 언어폭력, 신체 폭력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시작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스포츠 분야에 처음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대책을 내놓는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2008)’, ‘중도탈락 학생선수(2009년)’, ‘대학교 학생선수(2010년)’ 등 대상별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그 자체로 스포츠 현장에 경각심을 주어 예방의 효과를 주며,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범위와 심각성을 검토하기 유용하다. 예를 들어, 2008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1, 139명 중 78.8%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음을 보고했다. 성폭력 장소는 훈련장과 합숙소 등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지도자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 58.3%, 강제추행 25.4%, 강간 및 강제적 성관계 1.5%에 이르며, 동성 친구 및 선·후배간 성폭력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포럼, 스포츠 인권 해외 사례조사, 스포츠인권 캠페인,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 활발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를 시작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더불어 이 시기에 학자들도 성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³¹⁾ 예를 들어, 실태조사 이외에 ‘1차 정책수립기(2006-2010)’에 실시된 스포츠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여성 지도자 할당제 도입, 상시합숙 훈련 개선,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이 시기에 논의된 대책들이 현재의 스포츠 인권실태의 원인과 대책 마련의 기본 틀로 여전히 활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논의할 ‘정책과도기(2011-2018)’와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정책들이 ‘1차 정책수립기(2006-2010)’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정책이 선언적 정책의 수립에 중점을 두었을 뿐, 정책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아쉬운 대목이다.

30)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

31) 주종미, “운동부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08, 제11권 제3호.

2. 정책과도기(2011-2018)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가의 스포츠 인권 개입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과도기’였다. 먼저, 정권의 변화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사업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구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요 과제에서 스포츠 인권정책이 우선시 되지 못했다. 스포츠인권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면서 스포츠 현장이나 언론 및 국민의 관심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논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 출범, 2014년 5월,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한 문체부·검찰 합동수사반 발족, 2015년 2월 스포츠 정책 자문기구인 스포츠 3.0 위원회 출범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회의가 정례화되어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정책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³²⁾

이 시기의 스포츠 인권정책은 몇몇 학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인권침해에서 문제가 되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실태 및 성폭력의 원인 등을 밝힌 연구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첫째, 김잔디, 김대희(2019)는 성폭력의 특징으로 ‘위계관계’, ‘친밀함’, ‘폐쇄성’, ‘권한 남용’, ‘군대문화’를 지적했다.³³⁾ 스포츠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거리는 암수범죄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선희, 곽정현(2019)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³⁴⁾ 이들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여성 스포츠 성폭력 사례 8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로 남성 지도자가 다수의 여성 선수를 지속해서 성폭행하지만, 이를 관리 및 감독할 협회나 정부는 가해자의 처벌이나 강력한 조치보다는 시간 끌기와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현장에 복귀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문한식, 허현미(2013)는 성폭력의 유형을 크게 언어, 신체,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했다.³⁵⁾ 언어적 측면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 ‘경멸적인 언어’로 구분하였고, 신체적 측면은 ‘평상시/훈련 시 의도적인 신체 접촉’, ‘의도적 신체 부위 노출’, ‘치료 또는 예방을 빙자한 신체 접촉’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계적 측면은 ‘훈련과 관계

32) 민솔희/조재훈, “스포츠혁신권고안의 합의와 장애인스포츠 분야 적용”, 한국체육학회, 2020, 제59권 제1호, 340면.

33) 김잔디/김대희,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9, 제22권 제2호, 4면.

34) 이선희/곽정현, “여성스포츠 선수의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 한국체육과학회, 2019, 제28권.

35) 문한식/허현미, “여성선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Fuzzy AHP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 2013, 제27권 제2호.

없는 개인 면담’, ‘지도자의 사적 감정표현’, ‘사적 만남 요구’로 유형화하였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을 연구한 김민철, 홍은아(2014)는 ‘포기형’, ‘희망형’, ‘불신형’으로 유형화했다.³⁶⁾ 먼저, ‘포기형’은 스포츠 성폭력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희망형’은 성폭력의 원인을 폐쇄적인 운동 환경과 지도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신형’은 성폭력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했다.

이 시기의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는 대한체육회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³⁷⁾ 이 조사 결과는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010년 26.6%에서 2012년 9.4%, 2014년 12.5%, 2016년 3%, 2018년 2.7%로 감소하였음을 보고했다. 즉, 지난 8년간 성폭력 비율이 26.6%에서 2.7%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 결과를 성폭력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범죄가 줄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³⁸⁾ 그 이유로 첫째, 앞서 살펴본 학자들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둘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다.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며 폐쇄적인 스포츠 환경에서 대한체육회가 주도해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과연 솔직히 응답하고 대한체육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셋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승리 지상주의’가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없이 스포츠 성폭력이 급격히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면, ‘정책과도기(2011-2018)’는 ‘1차 정책수립기(2006-2010)’에서 밝혀진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반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결과만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스포츠 인권침해 상황이 좋아졌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차 정책 수립기(2006-2010)’를 통해 만들어진 스포츠 인권정책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 속에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현장에 안착했더라면 역대 최악의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6) 김민철/홍은아, “대학 여성 운동선수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체계”, 한국체육학회, 2014, 제53권 제6호.

37) 대한체육회,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 318-319면.

38) 김현수, 앞의 논문, 2020, 70면.

3.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

박영옥(2020)은 20109년 벌어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과 2020년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을 근거로 2019년 이후를 ‘정립기’로 명명했다.³⁹⁾ 이러한 시기 구분은 언론과 시민 사회를 통한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의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박영옥의 연구에서 ‘맹아기’에서 ‘정립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명칭과 기간 등 구분 점이 적절한가를 보았을 때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⁴⁰⁾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국가의 스포츠 정책 개입의 적극성 여부를 근거로 ‘1차 정책수립기’와 ‘정책과도기’에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2차 정책 수립기’로 설정했다.

스포츠 인권 논의가 ‘정책과도기(2011-2018)’를 거치며 국민의 관심 속에서도 멀어져 가는 가운데 2017년부터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마지막까지 미투 운동의 성역으로 남아있던 스포츠 분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차도 고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확고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2차 정책 수립기(2019-현재)’는 스포츠 관련 종사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대대적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정책과도기(2011-2018)’에 행해진 인권침해 실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 초·중·고 학생선수 실태조사와 정책적 의미

〈표 1〉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⁴¹⁾

학교급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인원수
초등학교	19%(3,423)	13%(2,320)	2.4%(438)	18,007
중학교	14%(3,039)	15%(3,288)	5%(1,071)	21,952
고등학교	15%(2,573)	16%(2,832)	4%(703)	17,598

39) 박영옥, 앞의 논문, 2020, 13면.

40) 박영옥, 앞의 논문, 2020, 11-13면.

4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07.). 앞의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 초·중·고 학생선수 57,557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⁴²⁾

첫째, 초등학생의 경우 3-5시간 이상의 과도한 훈련(49.1%)과 수업 결손(24.9%)을 경험하고 있었다. 폭언,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은 3,423명(19.0%)이 경험했으며 이들의 69.0%는 지도자를 주요 가해자로 응답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를 시키는 사례도 779명(4.3%)으로 파악되었다. 신체 폭력 경험자는 2,320명(12.9%)으로 교육부에서 2019년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타난 9.2%에 비해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75.5%), 선배 선수(1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목은 빙상, 수영, 태권도, 야구, 체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심각한 점은 신체 폭력을 경험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8.7%나 되었다는 점이다. 신체 폭력 이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일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도움을 구해도 이를 바꾸기가 어려우며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⁴³⁾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가 갖는 ‘체벌을 하면 운동기능이 향상된다.’는 고정관념과 맞물려 현장에서 더욱 공고하게 작동한다.⁴⁴⁾

둘째, 중학생의 경우,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을 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도 대부분(80.1%)의 학생선수가 훈련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60.3%의 학생선수는 훈련 시간이 길다고 인식했다. 한편,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은 13.8%로 나타났다. 신체 폭력을 경험한 중학교 학생선수는 3,288명(15.0%)으로 일반 중학생 학교폭력 대비 약 2.2배 높았다. 주요 가해자는 선배 선수(50.5%)와 지도자(43.8%) 등이었다. 성폭력 중에서 강간 피해 5건이 발생했고 성관계 요구도 9건이 발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셋째,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결손이 46.5%로 나타났으며 38.9%는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을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보충수업을 받는 경우도 e-school이 실제 학업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신체 폭력은 16.1%로 일반 고등학교 학교폭력 대비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선수 성폭력의 특징으로는 동성 선배나 동료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숙소 등 비공개 장소가 많았다.

종합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은 27.5%이며, 61.5%의 학생이 장시간 훈련에 노출되어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했다. 한편, 신체 폭력은 14.7%, 성희롱 및 성폭력은 6.7%가 경험했다. 문제는 신체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선수 6,155명 중 미신고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친 경우가 4,898명으로 그 비율이 79.6%에 이른다는 점이다.⁴⁵⁾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스포츠 인권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체육 현장의 일부 엘리트 스포츠인들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안 등을 ‘엘리트 체육 죽이기’라며 반발하거나, 혹은 체육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4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07).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발표”.

43) 김현수, 앞의 논문, 2020, 71면.

44) 홍덕기/류태호, 앞의 논문, 2007, 140면.

45)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0.

마찬가지인데 왜 체육 분야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⁴⁶⁾ 실태조사 결과는 학생선수 인권침해가 일반학생과 비교해 2배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양상이 다른 분야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스포츠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스포츠 인권정책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원스포츠 현장에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홍보,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대학교 학생선수, 실업팀 선수, 장애인 선수, 체육단체 종사자 실태조사와 정책적 의미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 실태조사 결과이다.⁴⁷⁾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2개 대학 7,031명 중 조사에 응답한 4,924명(남 4,050명, 여 674명)의 학생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언어폭력 31%, 신체폭력 33%, 성폭력 9.6%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15.8%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인권위 조사 결과였던 11.6%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신체 폭력 중 가장 빈번한 행위는 ‘머리 박기, 엎드려뻗치기’였고, ‘손이나 발을 이용한 직접적 구타행위’도 13%에 달했다.

신체 폭력의 가해자는 선배 선수가 코치나 감독보다 높았으며 장소는 기숙사(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학생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로 남자 선배에 의해 성적 대상화되는 언어적 성희롱이 많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주로 숙소에서 동성 간 성희롱이 많은 경우를 차지했다. 합숙의 경우 선후배가 한 방에서 생활함에 따라 저학년 선수들이 선배들의 잔심부름, 방 청소, 빨래 등을 도맡아 하게 되고 이러한 위계 문화를 1-2년 이상 감내하고 새로 들어오는 후배에게 폭력을 대물림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38%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86%가 3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과도한 훈련 시간으로 인해 학업, 친교, 대학 생활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교 학생선수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의 스포츠 인권정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로 다루었던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생선수의 나이, 대상, 성별, 종목 특성별로 맞춤형 스포츠 인권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폭력 경험이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위계적 문화 속에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지 못하고 훈련을 넘어서 일상생활까지도 통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실업팀 운동선수 실태조사 결과이다.⁴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 직장운동경기부

46) 흥덕기, 앞의 논문, 2020, 300면.

4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2.16). “인권위,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4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25). “인권위, 실업팀 성인선수대상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56개 종목 4,069명 중 총 1,251명(남 635명, 여 616명)의 응답과 138명의 개방형질문을 통한 자유 의견, 2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언어폭력 33.9%, 신체폭력 15.3%, 성폭력 11.4%, (성)폭력 목격경험 56.2% 등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성인임에도 거의 매일 맞는 경우가 8.2%로 신체 폭력의 피해가 심각했다. 가해자는 남성선수의 경우 선배 운동선수가 58.8%, 여성선수는 코치가 47.5%로 나타났다. 신체폭력 피해 선수 중 적극적 대처는 6.6%에 불과했다. 또한, 합숙소 경험이 86.4%에 달했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원하지 않는 회식 강요, 직장 성희롱 및 성차별, 결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은퇴 종용 문제 등 여성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사실, 실업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는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선수자원이 두텁지 않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국내 실업팀의 숫자가 적고 10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위계적, 억압적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한 번 지도자나 선배의 눈 밖에 나면 팀의 이적 등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선수에 비해 힘들다. 특히, 선수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팀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스포츠 인권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 및 이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운동선수 실태조사 결과이다.⁴⁹⁾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장애인 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 22.2%, 성폭력 피해 경험 9.2%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의 폭력 피해자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45.5%로 높았다. 가해자는 지도자가 49.6%로 가장 많았고, 훈련장, 경기장, 합숙소 등 체육활동이 행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체, 언어, 시각적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2%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피해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5%로 매우 낮았고, 외부기관에 신고한 피해자 중 67.3%가 신고 후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운동선수가 일반 선수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밝히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세심하게 스포츠 인권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 지도자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장애인 선수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체육단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이다.⁵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대한체육회, 대한

49)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2.13.). “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5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3.05.). “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결과 발표..”.

장애인체육회, 각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는 34.1%, 성폭력 피해는 10.0%에 달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정례조사 결과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결과인 8.1%와 비교했을 때 체육 관련 기관이 권위적, 위계적, 남성 중심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피해를 알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신고하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에서 체육단체장이 장애인 비하와 횡령으로 논란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단체 종사자가 스포츠 인권이나 비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⁵¹⁾

(3) 합숙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현장 조사와 정책적 의미

첫째, 선수들의 합숙소 조사 결과이다.⁵²⁾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합숙 훈련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상시합숙 훈련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이다. 또한,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통학생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점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상시합숙소 16곳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밀집하여 사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별도의 휴게시설이 미비한 곳도 8곳이었다. 특히 합숙 상황에서 외출 제한, 삭발 강요, 선배들의 빨래 강요, 주중 휴대폰 압수, 이성 교제 적발 시 삭발, 인원 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등 ‘상명하복’식 통제와 규율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 면담 결과,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 폭력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시설 안전 측면에서는 380개 기숙사 가운데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으며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가 모두 없는 곳도 5곳이나 확인되었다. 또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실내흡연 등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 조사 결과이다.⁵³⁾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 조사 결과,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에 뒤처지거나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경기 중, 작전타임 혹은 경기 종료 후 코치, 감독이 초, 중학생 선수에게 가하는 고함,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등의 행위가 여러 차례 목격됐다. 전국소년체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만7천여 명이 대부분 ‘모텔’ 형태의 숙소에 머물며 경기에

51) 뉴시스(2021.01.19). “장애인컬링협회장 결국 퇴소...‘장애인 비하·횡령’ 논란.”

52) 국가인권위원회,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 선수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019.

5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0.19). “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참여했다. 이 중 남자코치가 여성 선수들을 인솔하면서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이 숙박하기 부적절한 곳이 많았다. 또한, 체육관 중 탈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1/3에 불과했으며 복도, 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열악한 상황이 목격되었다. 셋째, 전국체육대회 현장 조사 결과이다.⁵⁴⁾ 참가자는 17개 시도에서 약 19,000명(고등부 8천명, 대학부 2천명, 일반부 9천명)이었다. 2019년 10월 실시된 전국체전 전 동안 기초, 구기, 투기 종목 등 총 14개 종목에 대해 1) 탈의실 및 휴게 공간, 2) 상담 및 신고체계, 3) 적절한 의료지원체계, 4)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 5) 과열된 경기장에서 인권침해 요소, 6) 적절한 숙박 환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언어폭력이 빈번했음이 밝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는 스포츠 인권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선수가 가장 많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소가 합숙소임을 고려할 때, 상시합숙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혹은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경기실적이 중요한 대회라는 점에서 인권보다는 경기실적이 우선시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사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장 점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기실적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시합숙을 해서라도 훈련 시간을 늘려서 경기력을 향상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상시합숙 금지 및 기숙사 전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개편 등을 이미 권고한 상황이다.⁵⁵⁾ 다만, 일부 체육 현장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으로 스포츠 인권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담보해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는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1차 정책수립기(2006-2010년)’나 ‘정책과도기(2011-2018년)’와는 차별성을 갖는다.⁵⁶⁾ 이들 법안을 종합하면, 첫째,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 둘째,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것, 셋째,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 넷째,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 다섯째, 도핑 방지를 포함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 여섯째,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할 것, 일곱째, 장려금을 받은 지도자가 (성)폭행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징계 중단할 것, 여덟째, 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및 채용기관에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인사 정보를 제공할 것, 아홉째, 스포츠 인권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이다.

또한,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는 다수의 실태조사와 법안 발의 이외에도 학회와 국회,

5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0.19). 앞의 기사.

55) 홍덕기, 앞의 논문, 2020, 290-292면.

56) 김대희, 앞의 논문, 2020, 153-157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을 주제로 한 각종 학술대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⁵⁷⁾ 또한, 학자들의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⁵⁸⁾ 이를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1월 스포츠 미투 사건 이후 대한체육회에서는 근절대책으로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원천 차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확충,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⁵⁹⁾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하고 피해 사실 확인 등 조사 및 구제, 폭력·성폭력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운동단체와 합숙 시설 진단·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를 주요 업무로 내세웠다. 한편, 이를 대책이 ‘1차 정책수립기(2006-2010년)’에 제시된 스포츠 인권정책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7차례에 걸친 권고안의 현장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스포츠 인권의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IV.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과 향후 과제

1. 원인: ‘스포츠강국’ 패러다임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은 인권침해 가해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적 문화가 지속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특히, 가해자 역시 이전에는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구조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승리 지상주의를 통한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대표된다.⁶⁰⁾ 국가는 소수의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국제대회의 메달을 따고 선수들은 연금과 군 면제 혜택 등의 보상을 받는다. 이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002 한일월드컵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위선양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스포츠강국’ 패러다임 속에서

57)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58) 이선희, 곽정현, “여성스포츠 선수의 성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한국체육과학회, 2019.

59) 김대희, 「스포츠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149면.

60) 흥덕기, 앞의 논문, 2020, 300면.

스포츠 인권침해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고했던 스포츠 강국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식 수준은 이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

본 연구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기제로 다섯가지 요소를 상정했다. 첫째,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이다. 선정이유는 결과를 중시하는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그동안의 평가는 과정을 배제한 채 주로 경기 실적 등 결과 중심의 양적 평가에만 치중되어 있어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둘째,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이다. 선정이유는 스포츠 분야만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폭력의 대물림을 지속시키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스포츠 인권에 취약한 환경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이다. 선정이유는 스포츠 강국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전제 속에 과도한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으며 인권교육이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점도 고려했다. 넷째와 다섯째 요소는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과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이다. 이들의 선정이유는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가 인권침해 보호,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1)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의 목적에 대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도 ‘국위선양’이 기술되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등에도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훈련에 정진’하거나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국위를 선양’,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 영광을 창출’과 같은 문구들이 존재한다. 국위선양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제대회에서의 메달획득이 중요하며 경기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실적만 낼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은 부차적으로 치부된다. 지도자도 계계약을 위해서는 경기실적을 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훈련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로 치환된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기제인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 도구화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체육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표현은 삭제되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법의 목적을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1년 2월 19일을 기준으로 법이 시행되며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의 종말을 알렸다. 하지만, 경기 실적 위주의 평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기실적 위주 평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 기준에 반드시 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회에는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 등 스포츠 분야 유명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기 실적 중심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선언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문화적 환경. 즉, ‘침묵의 카르텔’에 기인한다. ‘침묵의 카르텔’은 Me와 Too 사이에 존재하는 쉼표. 즉,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 다른 분야의 미투 운동과 같은 강한 연대를 어렵게 만든다.⁶¹⁾ 또한, 학숙소, 훈련장, 경기장 등의 공간은 외부와 단절되어 ‘쉼 문화’로 대표되는 폐쇄적인 속성을 띤다.⁶²⁾ 폐쇄적 공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선후배 관계는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특히, 지도자의 권한은 선수선발, 대회출전, 상급학교 진학 등 막강하여 지도자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내려도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아닌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가능하다. 지도자와 선수 간, 혹은 선·후배 간의 수평적인 문화는 ‘학생선수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보편적 인식과 함께 학생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배울 권리인 학습권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 종목에 입문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공부’와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일반학생들과 동떨어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성공한 확률은 매우 적으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으로 중도 탈락하거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 시민으로서 은퇴나 부상 이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3)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은 인권침해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일부 지도자는 과거 자신이 지도받았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비과학적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및 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지도자는 주당 적정 훈련

61) 정용철,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범지지 않을까를 묻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8.

62) 류태호/이주우, 앞의 논문, 2004.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에 대해 운동 종목의 특성, 운동참여자의 발달단계 및 나이, 성별, 운동기능 수준 등에 따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인권침해의 기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에서 신체 접촉은 훈련, 교육, 격려 행위와 혼동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동작이나 기술을 배울 때나 스포츠 지도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수용 가능한 행동의 범위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⁶³⁾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목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개념, 피해사례,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동규범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면담 금지, 성적 농담 금지, 전지 훈련 등 단체 여행 시 보호자 동의, 학생 숙소 무단 방문 금지, 훈련 시 신체 접촉의 금지 및 최소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 언급 금지, 사적 데이트 금지 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스포츠 인권교육에 필수적인 ‘성인지감수성’ 같은 경우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윤리적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회성 교육으로 내면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지도체육회에는 각각의 가해자 징계위원회 및 징계기준이 있다. 하지만,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징계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보 관리의 부실함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김영주(2019)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리 행위, 폭력, 성폭력, 폭언 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총 860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은 16건에 그쳤으며, 징계 중 복직 및 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 및 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되었다⁶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정보를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등록은 2018년 기준 55%에 그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징계양정기준을 각각 정해놓고 있지만, 일부 지역 징계위원회의 경우 가해자가 국위를 선양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포츠 유망주라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⁶⁵⁾ 징계 의결 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⁶⁶⁾

63) 김현수, 앞의 논문, 2020, 78면.

64) 김영주, 「스포츠비리 사례집」, 2019, 148면.

65) 김영주, 앞의 책, 2019.

위의 사례들은 가해자 징계시스템이 부실함을 보여준다. 지도자 채용 시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징계를 결격사유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채용 시 (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채용기준에 명시하며 징계정보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맞게 엄정한 가해자 징계와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5)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전문성’, ‘독립성’, ‘신뢰성’을 갖춘 전담부서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작동은 부실했다.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⁶⁷⁾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2차 피해의 예방이다. 2차 피해는 직접적인 학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나 신원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은 보통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에 있다고 지적하거나 피해자의 성격을 근거로 질타하는 경우, 둘째, 피해의 무게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판단하여 축소하는 경우, 셋째,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경우, 넷째,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 다섯째, 별것 아닌 일로 문제시하는 태도를 비난하는 경우, 여섯째, 피해자를 협박, 위협, 회유하거나 보복하는 경우이다. 피해자의 죄책감은 흔히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또한,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 중 사건이 처리된 현황을 보면 주의 및 경고로 종결된 사건이 32.2%에 이르고 평균 처리 기간도 180일을 넘는 실정이다.⁶⁸⁾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 및 신고접수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상근 인력은 상담 및 조사 3명, 행정 2명이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스포츠인권센터는 상담 및 교육 5명(진천선수촌 1명 포함), 조사 및 행정 2명에 불과하다.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는 상근직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체육단체에 신고 및 접수된 사건은 관행적으로 하위기관으로 이첩되어 지역 체육단체 단위에서 조사 및 처리되고 다시 상급 기관에

66) 뉴시스(2020.02.13). “체육계 지도자 비리신고 유명무실...‘솜방망이’ 처벌도 여전.”

67) 주종미, 「스포츠인권침해 심고와 피해자 보호」,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216-218면.

68) 데일리안(2020.10.16.). “최숙현법 그 이후, 스포츠 인권 어디로 가고 있나.”

보고하면서 사건이 지연된다. 이는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장시간 동안 사건이 누락, 축소, 은폐, 취하,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 후 가이드라인으로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

2. 향후 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

앞서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인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다섯가지 요소와 그에 대한 대안을 살펴봤다. 본 연구는 이와 함께 향후 과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그동안의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땀질식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관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제시했다.⁶⁹⁾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은 어느 한 분야의 개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스포츠 정책은 그 영역과 대상이 광범위하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지도자, 학부모, 선수 등 이해관계 집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실현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에 한정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법·제도’와 ‘인식’이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 법·제도의 개선

최근 스포츠 인권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이다. 구체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 ‘국위선양’ 표현 삭제, 표준근로계약서,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비리조사,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등이다. 다만, 체육 분야의 가장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수십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미래사회 스포츠 환경을 담아내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⁷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된 스포츠

69) 홍덕기, 앞의 논문, 2020, 288면.

1차- 스포츠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혁신 권고(19.05.07).
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19.06.04).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증진 및 스포츠·신체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권고(19.06.24).
4차-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19.06.24).
5차-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19.07.17).
6차-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19.08.22).
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권고(19.08.22).

70) 이대택, 앞의 논문, 2020, 26면.

기본법을 향후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¹⁾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포츠 인권 문제 직권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리 지상주의 패러다임 변혁의 전면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⁷²⁾ 이 권고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승리 지상주의에 기반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기관별 주요 권고’를 발표했다.⁷³⁾ 구체적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에서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와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에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과 지도자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장에게는 학생선수의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에서 선수들이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고, 가해자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체계적 신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새롭게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9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사건 접수 후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해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 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경찰청과 MOU 체결을 통해 파견된 경찰관 3명, 퇴직 경찰관 2명 등 전문조사인력을 활용하고 있다.⁷⁴⁾ 이전에 스포츠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던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37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 센터(25건) 및 스포츠인권센터(12건), 대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3건)에서 맡았던 미결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개소 후 약 한 달간 총 170건의 신고(인권침해신고 19, 비리신고 29, 상담 122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인권침해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에 있어서 체계적인 기관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길 기대한다.⁷⁵⁾

(2) 인식의 개선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김현수(2020)는 2000년대 후반에 제시된 대책들과 2019년 이후 발표된 대책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하며

7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2020.

7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7.15.), 앞의 기사.

7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0.19.), “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74) 뉴스핌(2020.10.16.), “스포츠윤리센터, 전현직 경찰 조사인력 적극 활용…총 170건 신고상담 접수.”.

7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20.

이는 이전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⁷⁶⁾ 기존의 대책들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보편적 스포츠인권 인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⁷⁷⁾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면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까?” 그렇지 않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의 개선은 의도적 노력과 교육을 통해 문화로 정착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스포츠 인권침해의 다섯가지 원인에 대한 대책과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즉, 인식의 개선은 ‘비판적 성찰’을 통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필요로 한다. ‘폭력의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비판적 성찰이 어렵다. ‘길들이기’, ‘통제’, ‘억압’은 운동하는 주체를 객체화시킨다. 즉 ‘사유’보다는 ‘생존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스포츠 상황에서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 신화가 되고 사태를 왜곡한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의 신화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한 국가의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을 ‘실천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현장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쇼트트랙 선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한 적이 있고, 2020년 6월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사건 후에도 스포츠 인권 강화를 지시한 적이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여자 프로배구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 후에도 체육 분야 폭력 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⁷⁸⁾ 이에 비해 스포츠 현장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는 약하다는 지적이다.⁷⁹⁾ 인식의 개선이 실천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인권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랑스러운 스포츠문화는 무엇일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선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고 말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명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스포츠는 비인간적이다. 폭력은 고이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아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중 받는 스포츠문화일 것이다. 한국 스포츠문화를 지배해온 수월성(meritocracy)사고는 이제는 존엄성(dignocracy)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중요한 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은 스포츠가 국민 모두의 권리이고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76) 김현수, 앞의 논문, 2020, 77면.

77) 이대택, 앞의 논문, 2020, 27면.

78) 스포츠경향(2021.02.15.), “문재인 대통령, 체육분야 폭력 근절, 특단의 노력 기울여 달라.”

79) 한국일보(2021.02.18.), “불똥 떨라, 잇단 스포츠 폭력 미투에도 시늉뿐인 대한체육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8.
- 국가인권위원회,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선수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01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 김대희, 「스포츠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 김민철, 홍은아, “대학 여성 운동선수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체계”, 한국체육학회, 제53권 제6호, 2014.
- 김영주, 「스포츠비리백서」, 국회의원 김영주의원실 정책자료집, 2019.
- 김잔디, 김대희,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2019.
-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제26권 제1호, 2018.
- 김현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제28권 제3호, 2020.
- 김현수, 박성주,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 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제59권 제5호, 2020.
- 남상우, 「스포츠인권침해 왜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가」,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학회 공동주최, 2020.
- 대한체육회,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
- 류태호,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류태호, 이주욱,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 제43권 제4호, 2004.
- 명왕성,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체육학회, 제59권 제5호, 2020.
- 민솔희, 조재훈, “스포츠혁신권고안의 합의와 장애인스포츠 분야 적용”, 한국체육학회, 제59권 제1호, 2020.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2020.
- 박영옥, 「스포츠인권정책의 과거」,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 안민석, 홍덕기, 「스포츠인권백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포츠 반(反)인권 사례 모음」. 국회 의원 안민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2019.
- 이대택, 「스포츠인권정책의 현재」,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 이선희, 곽정현, “여성스포츠 선수의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한국체육과학회, 제28권, 2019.
- 임수원, 박현균, “고등학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 코칭능력개발, 제21권 제4호, 2019.
- 정용철.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번지지 않을까를 묻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8.
- 정윤수,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운동선수의 인권”,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체육시민연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전국체육 교사모임 주최, 2003.
- 주종미,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2008.
- 주종미, 「스포츠인권침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 스포츠 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동주최, 2020.
- 홍덕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설정과 과제”, 한국체육학회, 제59권 제2호, 2020.
- 홍덕기, 류태호,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4권 제4호, 2007.

[기사]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07.), “인권위, 초·중·고 스포츠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25.), “인권위, 실업팀 성인선수대상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2.16.), “인권위,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2.13.), “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3.05.), “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7.15.),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0.19.), “무한경쟁과 과잉훈련 속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뉴스핌(2020.10.16). “스포츠윤리센터, 전·현직 경찰 조사인력 적극 활용... 총 170건 신고·상담 접수.”.

뉴시스(2020.02.13.). “체육계 지도자 비리신고 유명무실...‘솜방망이’ 처벌도 여전.”.

뉴시스(2021.01.19.). “장애인컬링협회장 결국 피소...장애인 비하·횡령 논란.”.

데일리안(2020.10.16.). “최숙현법 그 이후, 스포츠 인권 어디로 가고 있나.”.

데일리안(2021.02.22.). “내가 다 터트릴꼬얌. 이다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학폭 미투 확산.”.

스포츠경향(2021.02.15.). “문재인 대통령, 체육분야 폭력 근절, 특단의 노력 기울여 달라.”.

한국일보(2021.02.18.). “불똥 털라, 잇단 스포츠 폭력 미투에도 시늉뿐인 대한체육회.”.

Abstract

An Analysis of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in South Korea

Hong, Deock-K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and provide future task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South Korea. First, the human rights concept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rights to be educated,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In addition,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concept was discussed(Chapter II). Second,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first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06-2010)', 'the transition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11-2018)', and 'the second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 (2019-current)'(Chapter III). Third, the reason for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power' paradigm. Specifically, 'result-centered evaluation', 'hierarchical culture: a silent cartel', 'unscientific over-training', 'vulnerable offender penalize system', and 'vulnerabl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discussed(Chapter IV). Fourth, future task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for all' paradigm. Specifically, human rights in sports 'the improvement for law and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for human rights in sports' was discussed(Chapter IV).

Key Words : human rights in sports, sports policy, rights to be educated, sexual harassment,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sports for all, human rights education

* Associat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deockkikhong@gnu.ac.kr.